

『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LED시설(영상표시장치)을 설치함에 따라 LED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여 구미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부대시설 사용료에 LED시설 사용료 규정 신설(안 별표 2)

구분	기준	사용료		비 고
		기본료	추가사용료	
LED시설 (10m*5m)	1회/1일	100,000원	전기·조명(4시간) 25,000원	시간초과시 사용료 20%를 시간마다 가산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

-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LED시설(영상표시장치)을 설치함에 따라 사용료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임.

○ 검토 결과,

- 구미시 장애인복지시설 내 부대시설(LED 영상표시장치)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정하기 위해 현행 조례에 사용료 항목을 추가하여 복지시설 운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